

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 시행(예정)일: 2021. 03. 24

2. 개정 내용

개정전	개정(안)	비고
<p>제1조 ~ 제 10조 (생략)</p> <p><b>제11조 (계좌 통합 서비스)</b></p> <p>①계좌통합서비스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각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계좌의 조회, 이체 등의 거래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.</p> <p>②계좌통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해당사이트의 접속에 필요한 ID와 비밀번호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은 제출받은 ID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이용자가 요청한 내용을 처리합니다. 이 경우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받은 ID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이용자의 PC에 저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은행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처리된 정보의 확정 및 적시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 또한 연결된 다른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부정확성 및 서비스 이용불능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><b>제12조~ 제 15조</b> (생략)</p> <p><b>제16조 (서비스 제한)</b></p> <p>은행은 다음의 경우 당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1 ~ 2 (생략)</p>	<p>제1조 ~ 제 10조 (생략)</p> <p><b>제11조 (삭제)</b></p> <p><b>제11조 ~ 제14조</b> (좌동)</p> <p><b>제15조 (서비스 제한)</b></p> <p>① 은행은 다음의 경우 당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1 ~ 2 (좌동)</p> <p>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해 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.</p>	<p>서비스 중단에 따른 내용 삭제</p> <p>조 체상</p> <p>조 체상 거래제한에 대한 안내 추가에 따른 항 추가</p>

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개정전	개정(안)	비고
<p><b>제17조</b> (생 략)</p> <p><b>제18조 (사고신고)</b>  <b>제15조 2호</b>의 사유로 이용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<b>제19조 ~ 제20조</b> (생 략)</p>	<p><b>제16조</b> (좌 동)</p> <p><b>제17조 (사고신고)</b>  <b>제15조 ①항 2호</b>의 사유로 이용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<b>제18조 ~ 제19조</b> (좌 동)</p>	<p>조 체상</p> <p>조체상 제 15 조 항추가에 따른 변경</p> <p>조 체상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